

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 약정서

수수료지급인(이하 “갑”)은 의뢰인(이하 “병”)이 발행하고자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 수수료를 평가인(이하 “을”)에게 지급하며, 이와 관련하여 “갑”, “을”, “병” 은 후면의 약정사항에 동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

◎ 자산유동화증권 평가수수료 : 본평가수수료 + 정기평가수수료

① 본평가수수료 : 금 만 원 정(₩) <부가가치세 별도>

구 분	본평가수수료 금액
본평가수수료	피평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액 * 요율() ^{주1}

- 주1: 본평가수수료 계산시 요율은 직전 2년 이내 발행여부 및 발행규모에 따라 차등적용(후면 제4조제2항)
- 주2: 본평가수수료의 최저한도는 3,000만 원, 최고한도는 15,000만 원.
- 주3: 평정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본평가수수료의 수수료율 및 한도 등을 조정할 수 있음.
- 주4: 전문 투자자 등록용으로 본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평가수수료를 면제함.
- 주5: 신용평가 약정사항 제4조 제2항에 우선하여 상기 수수료를 적용함.

② 정기평가수수료 :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잔액에 따라 차등적용 <부가가치세 별도>

피평가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잔액 ^{주6}	정기평가수수료
1,500억 원 이하	500만 원
1,500억 원 초과 3,000억 원 이하	750만 원
3,000억 원 초과	1,000만 원

- 주6: 정기평가 등급확정일 기준 발행 잔액.
- 주7: 정기평가수수료는 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매년 당해 연도의 최초 정기평가등급 확정 이후 청구.
- 주8: 발행 이후 만기가 연장될 경우 새로운 만기 시까지 적용함.

년 월 일

수수료지급인(갑)

주 소 :
상 호 :
대표자 :

평가인(을)

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7(여의도동)
상 호 : NICE신용평가주식회사
대표자 : 김 명 수



의뢰인(병)

주 소 :
상 호 :
대표자 :



